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현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62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오현정, 이광호, 이영실,  
이승미, 김화숙, 김경영,  
이은주, 송아량, 이병도,  
김용연, 김상훈, 김소양,  
김혜련, 봉양순 의원 (14명)

##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2017.12.19.)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활동지원사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어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이 미비하므로 활동보조 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사업등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활동지원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 비용추계 전제

-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16,999명을(2019.1월말 기준)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후 인원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역량강화 교육은 각 활동지원사 당 2년주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함
  - 사업 지침상 활동지원사의 보수교육은 매년 주기적으로 활동지원기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연2회이상의 보수교육과 연1회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을 권고하고 있음. 위탁교육시 교육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음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역량강화 교육 비용은 48,000원으로 전제함(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산출단가)

#### 라. 비용추계 산식

- 서울시 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지원비용 = 2,040,000천원
  - 서울시 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지원비용
    - =  $\sum_{i=1}^5$  (연간 서울시 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지원비용)<sub>i</sub>
    - ※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서울시 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지원비용
    - = 지원단가 × 인원수
    - = 48,000원 × 8,500명
    - = 408,000천원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